

천주교 수원교구 ()성당 '청소년위원회' 운영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를 천주교 수원교구 ()성당 '청소년위원회'(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본당 내 청소년들의 신앙 증진을 위하여, 본당의 실정과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본당의 청소년 신앙생활 활성화를 위한 시의적절하고도 신속한 진단과 평가를 내려, 본당의 청소년 신앙 활동에 필요한 여건을 마련한다. 또한 주임신부의 사목 지침에 따라 청소년 신앙 활동에 필요한 방안을 상시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시설 및 경제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성격) 본회는 본당 사목평의회 회칙 제5조 9항에 의하여 제정되며,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로서, 각 본당별 특수성을 감안한 주임신부의 사목 지침에 따라 청소년 신앙 활동 연구 및 본당 청소년 정책 수립과 더불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평가와 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운영한다.

제2장 조직의 구성과 임명

제4조(구성) 본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2. 부위원장
3. 총무
4. 청소년분과장(초등부 분과장, 중고등부 분과장으로 분담할 수도 있다.)
5. 청년분과장
6. 각 분과 차장
7. 유관 단체장 : 초, 중·고 교감, 청년회장, 자모회장
8. 위촉위원 : 위촉위원(청소년 관련 전문가, 사목평의회 - 부회장, 재정위원 등)

제5조(임원) 본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분과장(청소년 분과장, 청년 분과장. 단, 규모가 작은 본당에서는 1명만 둘 수도 있다.) 및 총무를 임원으로 한다.

제6조(임명)

- ① 본회의 위원장은 주임신부가 임명하며, 총회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 ② 본회의 부위원장은 주임신부가 임명하며, 위원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 ③ 본회의 총무와 위촉위원은 주임신부가 임명하며, 위원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 ④ 본회의 분과장은 주임신부가 임명하며, 위원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 ⑤ 본회의 각 분과 차장은 주임신부가 임명하며, 해당 분과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 ⑥ 본회의 분과 산하의 단체장은 단체 회칙에 의거하여 주임신부가 임명한다.

제3장 위원의 임무와 교육

제7조(위원장) 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를 주관하여 운영한다. 또한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본당 청소년 현황 진단과 신앙생활 활성화 방안 연구 작업을 총괄하며, 이에 참여하는 위원들을 관리한다.

제8조(부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장과 함께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제반 사업에 참여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신한다. 특히 각 분과 및 유관 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진행되는 제반 사업에 협력한다.

제9조(총무) 총무는 위원회에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회 일정을 조절하며, 연락책임을 맡는다. 또한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보관하고, 회계 업무도 담당한다.(필요시 부총무나 서기, 회계를 선임하여 함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분과장·분과차장)

- ① 청소년 분과장은 초등부 및 중고등부 주일학교에서 진행하는 제반 사업(교리교육 및 동아리 활동, 제반 주일학교 행사)을 총괄하며, 학생들의 신앙교육에 관련된 본당 현실을 진단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 수립에 필요한 연구를 책임진다.(청소년 분과를 초등부 분과와 중고등부 분과로 나누어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 ② 청년 분과장은 청년회에서 진행하는 제반 사업을 총괄하며, 특히 청년 신앙교육에 관련된 본당 현실을 진단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 수립에 필요한 연구를 책임진다.
- ③ 각 분과 차장 : 각 분과장은 필요시 분과별로 차장을 선임하여 함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때 각 분과장과 함께 분과 업무를 나누어 수행할 수 있으며, 분과장의

유고시 분과장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한다.

- ④ 각 계층별 분과장을 선임하기 어려운 본당에서는 계층별 분과장의 역할을 겸임할 수 있다.

제11조(유관 단체장) 초등부, 중고등부 교감 및 청년회장과 자모회장 등의 청소년위원회 산하의 단체장들은 본당 주임신부의 사목 방침에 따라 각 단체 고유 사업을 매년 연중 기획하고 주관하며, 분과장과 더불어 각 단체 본당 현실을 진단 평가하고 새로운 청소년 정책 수립 연구에 참여한다.

제12조(위촉위원) 위촉위원들은 위원회에서 주어지는 본당 청소년 신앙생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전문분야의 연구작업을 수행하며, 주임 신부의 사목 정책에 합당한 청소년 사목 정책안을 마련하여 제시한다.

제13조(위원의 교육 의무) 청소년위원회 위원들은 대리구, 교구 차원에서 실시하는 정기 또는 비정기적 교육 및 연수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자신들의 영적인 성장과 청소년 및 봉사자를 지도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도록 힘써야 한다.

제4장 회의와 의결

제14조(모임) 본 회의 회의는 월 1회 정기 회의와 연 1회 정기 총회를 가지며,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하여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임신부의 재가를 받아 실행한다. 또한 의결된 사항이나 청소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행사, 교육, 사업에 대한 결재라인을 최소화하여 신속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제5장 재 정

제15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본당 운영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칙은 2005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교회법과 교회의 전통에 따르며, 본 규칙 시행 이전의 모든 규칙은 폐지되고, 본 규칙은 교구장에 의해 개정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칙은 2007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칙은 201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칙은 2012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